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총	건



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신청

-1 }	人	년	년	월	일	-1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	
접	宁	제			호	처	리	인		

	부동산의 표시
등기원인과 그 연월일	년 월 일 설정계약
등기의 목적	근저당권부질권
채 권 액	금 원
채 무 자	
변 제 기	
이 자	
근저당권의 표시	
구분 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 주 소 (소 재 지)
등 기 의 무 자	
등 기 권 리 자	



등	록	면	허	세		금					-	원
지	방	亚	육	세		금						원
세	액		합	계		금					J	원
						급					J	원
등	기 신	청	수 수	豆	L 1	古부번호	. :					
					Ç	일괄납부	- :		건		Ş	길
				등	기의	비무자의	등기	필정보	_			
	부동산	고유	·번호									
	성명	(명칭])			일련	번호			비밀병	번호	
					첨	부	서	면				
	의질권4 록면허/			인서		통	\\ \\ \\ \]	타〉				
· 등	기신청~	·수수	료 영수	필확	인사	통						
· 등	기필증					통						
• 주 5	민등록표	도초	본(또는	등본	<u>l</u>)	통						
• 위 9	임장					통						
						년	월		일			
	위 신	청인						(<u>)</u>	(전화 : (전화 :)	
	(또	는)우	내 대리	인					(전호	화:)	
			지	방법역	원					귀중	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신청

	,	년	월 일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수	제	호	처 리 인		

① 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
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1-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

적 1층 101호 86.03m²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

1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2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

대 1,400m² 대 1,600㎡

대지권의 종류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1,2 : 3,000분의 500

		۷Į	상
2 등	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5월 25	일 설정계약
3 =	등기의 목적	근저당권부질권	
4) ×	내 권 액	금 50,000,000원	
(5) ×	대 무 자	이대백 서울특별	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(서초동)
6 ≒	변 제 기	2018년 5월 24	일
7 0	기 자	연 1할	
® =	근저당권의 표시	2017년 4월 3일	제1001호 순위 3번의 근저당권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 소(소재지)
950기의무자	이 대 백	700101-1234567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(서초동)
⑩등기권리자	김 갑 동	801231-1234567	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(다동)



① 등 록 면 허 세	금	6,000원
① 지 방 교 육 세	금	1,200 원
① 세 액 합 계	금	7.200 원
	금	15,000 원
③ 등기신청수수료	납부번호 : 12-12-12	2345678-0
	일괄납부 : 김	언 원
4	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	 보
부동산고유번호	1102-200	06-002095
성명(명칭)	일련번호	비밀번호
이대백	A33D-M073-35J1	41-1234
(5)	첨 부 서	면 면
·권리질권설정계약서 ·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·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: ·등기필증 ·주민등록표초본 ·위임장		
(6) 위 신청인 이 김(또는)위 대리인		전화: 010-1234-5678) 전화: 010-5678-1234) (전화:)
서울중앙	지방법원 등7	 국 귀중

삭1행

삭1행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등기신청안내서 -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등기신청

■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등기란

이 신청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(질권자)와 등기의무자(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, 질권설정자)가 공동으로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례입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① 공동신청

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와 권리질권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 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항극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간이나 신청인간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흑 사용하고, 벽지흑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응 하였응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격되는 서명)응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권리질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토지(임야)의 표시방법은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을 기재하고, 건물인 경우에 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건물의 종류,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.



② 둥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설정계약"으로, 연월일은 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.

③ 등기의 목적란

"근저당권부 질권"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④ 채권액(또는 채권최고액)란

아라비아 숫자로 "금 ○원 "으로 기재합니다.

⑤ 채무자란

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,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.

⑥ 변제기란

약정이 있는 경우 그 연월일을 기재합니다.

⑦ 이자란

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이율을 기재합니다.

⑧ 근저당권의 표시란

질권의 목적인 근저당권을 기재합니다.

(예: 2009년 9월 15일 제 12345호 순위 3번의 근저당권)

⑨ 둥기의무자란

질권설정자(근저당권자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표시와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와 현재의 주소와 다른 경우, 등기명의인표시변경(또는 경정)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변경한 후 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₩ 등기권리자란

질권자(채권자)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①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매 1건당 6,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며,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.

① 세액합계라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③ 등기신청수수료란



- ⑦ 부동산 1개당 15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 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① 여러 전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 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④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

- ②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 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- ①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©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⑤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16 신청인등란

- ⑦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②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계약서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.

③ 둥기필증

등기의무자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. 단,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 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< 시 · 구 · 군청 >

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 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주민등록표초본(또는 등본)

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 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<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기 타>

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・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둥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주민등록표초 (등)본, 설정계약서,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